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97 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성일종·임종득·백종헌

곽규택・서지영・윤상현

조 국・최수진・유용원

강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,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,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 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1조의2(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) ① 국방부장관은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(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다)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, 운영·유지,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국방정보시스템,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, 획득, 운영·유지, 폐기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기관 또는 부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1조의2(국방 사이버보안 위험
	관리) ① 국방부장관은 「국군
	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
	기관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
	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
	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(「방위
	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다)에 대
	해 소요기획부터 획득, 운영ㆍ
	유지,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
	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
	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
	<u>마련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② 국방정보시스템, 무기체계
	및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,
	획득, 운영·유지, 폐기를 수행
	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제
	1항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
	리를 수행하여야 한다.
<u> <신 설></u>	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
	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및 사이
	버보안 위험관리 수행 기관 또
	는 부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
	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